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6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설치와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도시관리국 사무분장 정비
(안 제2~제3조, 제8조)
- 나.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신설(안 제10조의 2)
- 다.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기존) 2023년 6월30일 → (변경) 2026년 6월30일(부칙 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 1) 입법예고(2022. 10. 13. ~ 2022. 10. 24.)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과장·담당관”을 “국장·과장·담당관·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담당관”을 “과·담당관·추진단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립 및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고도제한 완화”를 “수립”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도심활성화추진단) 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둔다.

②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민관합동 협업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구민 소통을 위한 조직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130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p> <p>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u>국장·과장·담당관</u>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구 본청의 <u>과·담당관</u>,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국·담당관)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u>감사담당관</u>을 둔다.</p> <p>제8조(도시관리국) ① (생략)</p> <p>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u>도시계획</u>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택지개발지구 관리·운영,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p>	<p>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p> <p>① ----- ----- <u>국장·과장·담당관·추진단장</u>----- ----- ----- -----.</p> <p>② ----- <u>과·담당관·추진단장</u>----- -----.</p> <p>제3조(국·담당관) ----- ----- ----- ----- <u>감사담당관, 원도심활성화 추진단</u>----- -----.</p> <p>제8조(도시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u> ----- ----- -----</p>

4.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
선,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신설>

4. -----
수립-----

5.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원도심활성화추진단) 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둔다.

②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
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관
한 사항

5. 민관합동 협업체제 구축·운영
에 관한 사항

6. 구민 소통을 위한 조직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성 명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담당 : 행정6급 남명훈)
연락처	02-2600-603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47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10.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설치와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도시관리국 사무분장 정비
(안 제2~제3조, 제8조)
- 나.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신설(안 제10조의 2)
- 다.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기존) 2023년 6월30일 → (변경) 2026년 6월30일(부칙 안 제2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설치와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 및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47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남명훈	전화번호	02-2600-603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안소현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10월 1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10월 24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0월 25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